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4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최형두·고동진·서지영

박정훈 • 유상범 • 김종양

윤영석 · 최수진 · 김소희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·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·점검·확인·분석·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 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2 신설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12절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4조의2(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등) 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·점검·확인·분석·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(이하 이 조에서 "자체감사"라 한다)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.
 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. 이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 4제2항·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 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.
 -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⑤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 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할 수 있다.
 - 1. 출석·답변의 요구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

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)

- 2. 관계 서류 ·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
- 3.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
- 4. 금고・창고・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
-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·문책, 시정, 주의, 개선, 권고, 고발, 변상명령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·운영, 감사기구의 장·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 및 자체감사 실시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개 정 안
<신 설>	제104조의2(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등) 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·점검·확인·분석·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(이하 이 조에서 "자체감사"라 한다)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.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2항·제4항및제5항을 준용한다.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.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

한다.

- ⑤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출석・답변의 요구(「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)
- 2. 관계 서류·장부 및 물품 등 의 제출 요구
- 3.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 료의 조사
- 4. 금고·창고·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
-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 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 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6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·문책, 시정, 주의, 개선, 권고, 고발, 변상명령 등의 처 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

되어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감사기 구의 구성·운영, 감사기구의 장·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 및 자체감사 실시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